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0 선고 2021가합2252 판결 [이행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2. 23.

판 결 선 고 2022. 3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60,000,000원, 선정자 C에게 50,000,000원, 선정자 D에게 60,000,000원, 선정자 E에게 5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, 선정자 C, D, E(이하 ‘선정자들’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 F(이하 ‘F’이라 한다)과 아래와 같이 출자계약(이하 ‘이 사건 각 출자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당사자	체결일	출자금	투자기간
원고	2020. 11. 23.	60,000,000원	2020. 11. 23. ~ 2021. 5. 22.
선정자 C	2020. 11. 25.	50,000,000원	2020. 11. 25. ~ 2021. 5. 24.
선정자 D	2020. 11. 20.	60,000,000원	2020. 11. 20. ~ 2021. 5. 19.
선정자 E	2020. 9. 2.	50,000,000원	2020. 9. 2. ~ 2021. 3. 1.

이 사건 각 출자계약에서는 F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.

나.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 이 사건 각 출자계약 체결일 무렵 출자금을 각 송금하였다.

다. F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보증계약(이하 ‘이 사건 각 보증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교부하였다.

보증일	보증금	보증채권자	피보증채무	보증기간
2020. 12. 9.	60,000,000원	원고	이행보증	2020. 11. 23. ~ 2021. 5. 22.
2020. 11. 2.	50,000,000원	선정자 C	이행보증	2020. 10. 20. ~ 2021. 4. 19.
2020. 12. 9.	60,000,000원	선정자 D	이행보증	2020. 11. 20. ~ 2021. 5. 19.
2020. 9. 16.	50,000,000원	선정자 E	이행보증	2020. 9. 2. ~ 2021. 3. 1.

라.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출자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F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 및

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F의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으로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60,000,000원, 선정자 C에게 50,000,000원, 선정자 D에게 60,000,000원, 선정자 E에게 5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석재, 판사 이유섭, 판사 황해철

선 정 자 명 단

1. A
 2. C
 3. D
 4. E
- 끝.

